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배포 일시	2021. 6. 29.(화) 총 5매(본문 3, 참고 2)	
담당 부서	양식산업과	담 당 자	• 과장 허만욱, 사무관 장용호, 주무관 박혜미 • ☎ (044) 200-5630, 5633, 5634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방안 마련한다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6. 29. 본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방치·적재된 굴 패각 등의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6월 2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수산부산물은「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었는데, 보관·처리에 대한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수산부산물이 불법 투기·방치되면서 악취 발생 및 경관훼손 등을 일으켜 왔다. 특히, 굴 패각은 매년 약 30만 톤이 발생되나, 일부만 사료·비료 등으로 활용되고 연간 약 23만 톤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현재는 약 100만 톤(누적)이 적재·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수산부산물 폐기물 보관기간은 90일(중간가공 폐기물은 120일)로 제약되고, 재활용 업체의 보관량에도 제약이 있던 상황

이에, 해양수산부는 임시방편으로 해양배출해역 투기를 허용해왔으나, 사료·비료 등으로의 재활용(약 2만 원/톤)보다 상대적인 비용이 많이 들고(약 6만 원 이상/톤), 패각자원 폐기에 대한 비판 등으로 원활한 처리가 쉽지 않았다. 또 다른 방편으로는 소각·매립을 통한 패각처리를 시도하였으나, 각종 반대 등으로 패각처리 경로가 사실상 차단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지난 20여 년간 굴 패각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벌레로 지역 거주민과 생산자 간 고질적인 갈등이 유발되어 왔으며, 지자체, 지역 도의회, 지역민 등도 패각처리 촉구안 의결, 단체장 주요건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해결을 호소하였다. 심지어, 어촌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수산업 단체들이 굴 패각 등의 폐기물 처리경로가 없어 지역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굴 패각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산업자재, 해양환경 보호 소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체사피크만(Chesapeake Bay) 인근에 25억 개의 굴 패각을 살포하여 해양정화, 암초복원 등에 활용하며, 영국과 네덜란드는 해양수산생물 인공서식지 조성을 통한 종 복원 및 수질 필터제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도 토양개량제, 인공어초, 수산자원 조성 등에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대제철, 포스코, 광양제철 등의 제철소에서 석회광석 채굴에 따른 화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석회석 비용 증가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천연 패각의 탄산칼슘을 석회석 대체제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폐기물관리법」의 엄격한 규제에 막혀 패각이 고부가 소재로 재활용되지 못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굴 패각을 포함하여 어획·양식·가공 등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연안에 방치되고 쌓여있는 수산부산물을 탈황소재, 제철소 소결재 등 고부가 소재로 활용하고, 연안어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률 제정안에는 수산부산물 기본계획 수립부터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의무, 수산부산물처리업 허가 등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내용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등의 재정·기술적 지원근거를 담았다.

지홍태 굴수하식수협 조합장은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수산업계와 지역 거주민 간의 오랜 갈등이 해소되고, 우리 수산업이 청정산업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양식업계뿐만 아니라 지역민 모두가 반기고 있다.”라며, “어촌지역에도 새로운 소득원 창출원이 되어 연안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법률안 제정은 수산업이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청정산업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다.”라며, “돈 주고 버리는 수산폐기물이 돈 받고 판매하는 자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있을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 운영 등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1 **굴 패각부산물 적재 사진**

□ 굴 패각부산물 적재 사진(육상)

□ 굴 패각부산물 적재 사진(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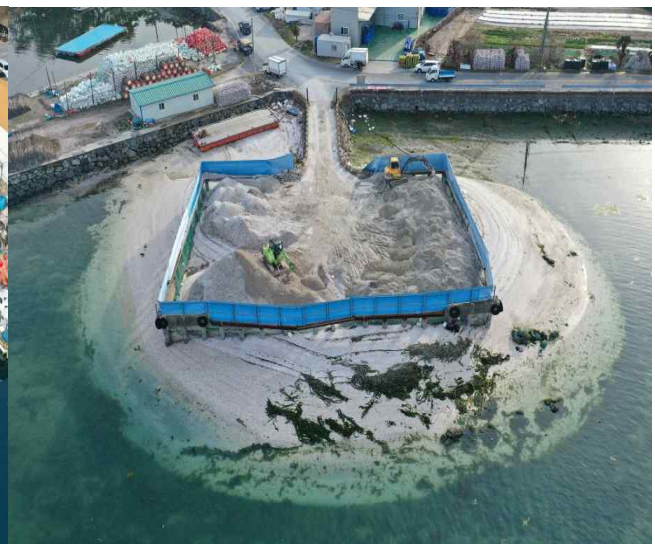

※ 굴 패각은 매년 **약 12만톤(전체생산량의 40%)**가 보관·방치되며, 현재 보관·방치 총누적량은 **92만톤 이상(*)**으로 추정

– 굴 가공장 주변(약 48만톤), 패화석 사료·비료처리업체(28.3만톤), 박신장(10.8만톤) 간이집하장 14개소(5만톤) 등 추정

* (집계불가) 산지매립, 어장투하, 자체 농지 활용 등

참고 2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수산부산물법 주요 내용

(**제1조**)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5조**)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함

(**제6조**)기초자치단체장은 수산부산물의 발생량, 처리실적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제7조**)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하는 자 중에서 수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산부산물의 분리 배출 의무를 부과함.

(**제9조**)수산부산물 처리업(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제16조**)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해당 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